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88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진중오 · 박수민 · 김상훈
서천호 · 고동진 · 김승수
박정하 · 김용태 · 이만희
엄태영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적정 임금표(이하 “경력별임금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력별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경력별임금표에는 호봉제, 장기근속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력별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건비 지급실태의 조사·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적정 임금표(이하 “경력별 임금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력별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u> <u>② 경력별임금표에는 호봉제, 장기근속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력별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인건비 지급실태의 조사·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